

전주지방법원 2017. 12. 6 선고 2017가단15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종결 2017.11.22.

판결선고 2017.12.6.

주 문

1.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61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15,16,17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조립비닐건물 3㎡와 위 감정도 표시 17,16,18,19,20,21,22,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ㄴ) 부분 콘크리트 건물 17㎡를 각 철거하고, 위 감정도 표시 1,2,8,9,10,11,12,13,14,6,7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대지 38㎡를 원고에게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,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나 영상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

종합하면, 원고가 2016.10.25. 전주시 완산구 c 대 6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208㎡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1,15,16,17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ㄱ) 부분 조립식비닐건물 3㎡와 위 감정도 표시 17,16,18,19,20,21,22,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ㄴ)부분 콘크리트 건물 17㎡를 각 설치하여 위 감정도 표시 1,2,8,9,10,11,12,13,14,6,7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부분 대지 38㎡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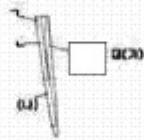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.

판 사 정 ○ 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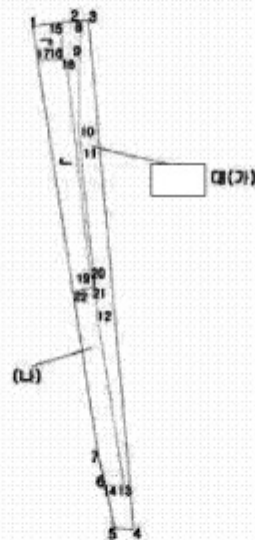
감 정 도

전주시 완산구

축척 1,200분의 1



참 고 도



범 례	
———	지 역 도 선
———	일종의벽및건물치마측정

지 번	면 적(m ²)	부호	연 결 번 호	면적(m ²)	비 고
	61	(가)	8,3,4,5,14,13,12,11,10,9,8	23	대(당장외벽측정)
		(나)	1,2,8,9,10,11,12,13,14,6,7,1	36	대(당장외벽측정)
	61	ㄱ	1,15,16,17,1	3	조립식 비닐건물
		ㄴ	17,16,18,19,20,21,22,17	17	콘크리트건물치마